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광 명 시 장

1.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2023. 12. 22.)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원을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용개정(안 제3조제6호)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 4.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균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균형개발과장)

1)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14234)

2) 팩스, 이메일: 02-2680-5467, lmh2503@korea.kr

3) 문의처: 광명시청 균형개발과(☎ 02-2680-6946)

의견제출서

- 자치법규명: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6.>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14. 8. 22.>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5.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6. 경기도 보조·융자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용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용자조건 등) ① 용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용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

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용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4. 8. 22., 2019. 8. 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 「재무회계규칙」 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4. 8. 22.>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균형개발과
입 안 자	실·과장	서환승
	팀장 직위·성명	재개발팀장 김수정
	담당자 성명·전화	이미혜 (02-2680-694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보조·융자금</p> <p>7. (생략)</p>	<p>제3조(재원) -----</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경기도 보조·융자금</u></p> <p>7.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서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20호, 2023. 12. 22. 폐지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 10. 31.]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1., 2012.1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12.11.6.>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개정 2012.11.6.>
 4.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개정 2012.11.6.>
-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1., 2012.1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12.11.6.>
 3.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개정 2012.11.6.>
 4.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12.11.6.>
 5.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12.11.6.>
-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

신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장 서환승